

행복한변화
살고 싶은 당진



- 국공립어린이집 -

2018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상반기)

2018. 10.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 국공립어린이집 -

2018년도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상반기)

2018년도 당진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사·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I 감사개요

- 기 간 : 2018. 1. 1. ~ 6. 30. (기간 중 3회)
- 대 상 : 3개 기관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 감사범위 : 2015. 1. 1. ~ 감사일 현재
- 감사내용 : 위·수탁 관련 행정절차 준수, 후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인사, 조직, 물품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운영, 그 밖의 관계법령 준수 등 시설운영 전반
- 감 사 반 : 1개반 / 4명

II 감사 결과

- 행 정 상 : 8건(시정 5, 주의 3)
- 재 정 상 : 2건 18,083천원(환수)

Ⅲ 기관별 지적사항 요약

□ ★★★어린이집

① 세출예산 이월 및 결산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잔액증명 및 통장확인을 통해 회계연도 만료일(2. 29.)을 기준으로 전계좌(운영비, 보험료, 퇴직금 등) 잔액의 합계액을 이월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2015년과 2016년 결산 시 운영비 계좌 잔액만을 결산에 반영함.

☞ 조치사항 : 주의

② 적립금(적립식 보험 등) 사용 관련 규정 미준수

운전자보험, 교직원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저축성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적립식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시에 사전보고하지 않았으며 결산자료에도 잔액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미첨부하였고, 교직원상해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은 11,990,800원이지만 어린이집의 인건비 예산부족의 사유로 중도해지하여 환급금 11,048,022원 만을 지급받아 재정상 944,778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주의

③ 세출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르면 예산은 시설의 장이 편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과 2016년 2개 년도에 걸쳐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총66건 18,648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함.

☞ 조치사항 : 주의

□ ○○○어린이집

① 시간외수당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34건 28,448천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소득 신고를 소홀히 함.

☞ 조치사항 : 시정[시간외 수당 28,448천원에 대한 소득신고 조치]

② 보육교직원 호봉 확정 부적정

보육교직원 호봉확정기준인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2000. 1. 1.이전의 어린이집 근무경력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동일 직종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나, 보육교사 초임호봉 확정 시에 호봉으로 인정할 수 없는 5년 11개월을 제외한 6호봉으로 확정하여야 함에도 11호봉으로 확정함.

☞ 조치사항 : 시정[환수 : 15,313천원]

③ 4대 보험료 정산 부적정

4대보험료 정산은 “보험요율 공제금액 - 보험료 납부액”의 산식으로 정산하여 개인별로 환급하여야 하나 4대보험 정산 시 개인 공제액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부당하게 포함하여 정산함.

☞ 조치사항 : 시정[4대보험료 정산액 재산정 후 정산조치]

□ ◆◆◆어린이집

① 연찬잔여일수 보상 부적정

2016년도분 개인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시 대상자 3명중 2명만 지급하고 1인은 지급을 누락함.

☞ 조치사항 : 시정[누락된 보육교직원 연차수당 지급 : 168천원]

②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부적정

보육교직원 호봉획정기준인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경력 중 기간제교사로 근무한경력은 50%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00%인정하여 정상호봉인 6호봉보다 4호봉이 많은 10호봉으로 과다 책정됨.

☞ 조치사항 : 시정[환수 : 2,770천원]